

#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2003 ~ 38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03. 9. 18.  
제안자 : 김정희 의원외 1인

## ■ 수정 이유

-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소장 5급이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이 되지 않아 증원을 감 하고자 함

## □ 주요골자

-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(제2조 제2호)
  - 집행기관의 정원 : 593명 ⇒ 592명(감 1)
 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
  - 총 계 : 606명 ⇒ 1명(감)

#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6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592명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

##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607</u> 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93</u>명                 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606</u> 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92</u>명                 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</p>